

1. 개정이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내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오납(過誤納), 할(割) 등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순화 용어로 변경 (제10조제3항 제1호,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제1호)

나. 수수료 전부반환 기한을 ‘연수개강 7일전까지 취소’에서 ‘연수개강일 이전까지 취소’로 확대 (제1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mj9043@korea.kr
- 팩스 : (02) 2100 - 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 2100 - 6275, 팩스 (02) 2100 - 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3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세종이엔씨(민경남) ②(주)다우컨설팅트(연제문)
③(주)서현기술단(안명숙) ④ 금호산업(주)(서재환)
⑤ 대전도시공사(김재혁) ⑥ 계룡건설산업(주)(이승찬)

나. 전화번호 : ① 042-719-8860 ② 061-395-2310 ③ 031-425-2100 ④ 02-6303-0959

⑤ 042-530-9340 ⑥ 042-480-7114

2. 명칭 : 경량 패널을 이용한 원지반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Top-Down 시공에 의해 원지반을 패널의 높이만큼 수직굴착한 후 경량화된 패널 사용과 시멘트 몰탈 충전을 통해 원지반 부착방식의 패널 설치가 가능한 네일형 절토부 옹벽으로 패널의 적층을 위한 기초블록 및 배면 뒤채움 공중이 간소화되어 시공성이 개선되고 시공중 안전성 및 장기적인 내구성, 유지관리를 향상시킨 공법이다.

<범위>

풍화대 지반의 깎기비탈면에서 원지반을 수직굴착한 후 경량 프리캐스트 패널을 이용하여 굴착면에 부착하는 형태로 패널을 설치하고 배면 틈새부는 시멘트 몰탈 충전을 통하여 원지반과 패널이 일체화 되는 원지반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534호

개항역사와 함께한 인천항 내항 1·8부두의 노후 항만공간을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관광·산업거점 및 역사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이 공고문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제3차 제안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고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제3차 제안공모 공고